

청년기본소득이 출산의사에 미치는 효과 예측: 20~30대 초반 기혼여성을 중심으로

이승주*·민인식**

초 록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음에도 그 효과가 크지 않았다. 최근 청년계층에게 현물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보다 현금성 소득보장을 좀 더 두텁게 해주는 것이 청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출산율을 제고해줄 것이라는 주장들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현금지원제도인 청년기본소득을 활용해 현금지원을 강화할 때 출산율에 변화가 있을지 예측해보았다. 본 분석을 위해 「여성가족패널」 5~6차 자료 중 21~34세까지의 기혼여성들을 표본으로 추출하였다. 이 표본을 활용해 해당 청년들 개인마다 월 50만원씩의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가정할 때 출산의사에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모의실험방식을 통해 예측하였다. 본 연구결과 청년기본소득과 같은 현금지원을 통해 가구소득을 증가시켰을 때 출산율이 크게 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육아를 위한 인프라나 서비스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은 채 소득이 늘어난다고 출산의사가 긍정적으로 나타나진 않음을 보여준다. 기본소득은 출산율 증가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아 본 연구 결과를 향후 기본소득 도입 정당화 근거로 활용하기는 어려우나, 본 연구는 청년기본소득과 같이 현금지원을 통해 소득이 늘어났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파생적 효과를 검토해 보았다는 점에서 학술적인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 출산의사, 청년기본소득, 보편적복지, 모의실험, 이산선택모형

* 제1저자: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불평등과 사회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lustrouschris@gmail.com)

** 교신저자: 경희대학교 정경대학 경제학과 교수(imin@khu.ac.kr)

I. 머리말

참여정부 출범 이후 13년 동안 저출생 해소를 위해 153조에 달하는 예산을 지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0명도 채 안 되는 0.98명으로 떨어져 OECD국가들 중 꼴찌를 기록하였다. 이처럼 우리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출산율이 저조하게 나타나는 것은 물론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경제활동 참가하면서 자녀를 반드시 낳아야 하는가 하는 가치관 변화의 탓도 있겠으나, 자녀양육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거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한 것에도 기인한다(이삼식, 2016). 이처럼 저출생 문제가 지속될 경우 가까운 미래에 경제활동인구가 크게 감소하여 국가 성장 동력을 잃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최악의 경우 국가존립마저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황남희 외, 2016).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하듯 그동안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각종 정책과 제도가 시행되었으나, 혼인 적령기 청년세대가 안정된 경제적 환경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효과는 그리 크지 않았다(황남희 외, 2016). 최영준·윤성열(2019)의 연구에 따르면 20대 초·후반 모두 향후 결혼과 출산 선택에 관해 60% 이상이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으며, 그 주요 이유로 청년들의 불안정한 삶을 꼽았다. 이에 그동안 우리 정부는 출산력 제고를 위한 직접적인 정책뿐만 아니라 고용, 주거문제 등 사회 구조적인 문제해결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보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출산율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는 우리나라의 대부분 저출생 정책이 결혼 이후 이미 출산한 가구들에게만 주로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미혼 청년들이 결혼 및 출산을 결정하는데 직접적으로 효과를 미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강영주·최지민, 2018), 장기적으로 자녀 양육비 부담이나 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경제활동 포기 등 경제적 이유가 투영된 결과일 수도 있다(강영주·최지민, 2018; 이삼식, 2016; 이승주·문승현, 2017; 황남희 외 2016). 어떤 이유에서든 지금까지 1~3차에 걸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출산율 제고 목표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간 출산율 제고를 목적으로 시행된 일련의 정책들은 주로 서비스 및 바우처 제공, 또는 현금지원 경우도 지역마다 지역화폐나 상품권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같은 기존 출산장려책들은 불필요한 중복수혜를 방지하고 정책대상을 관리하는데 효과적일 수는 있으나, 수급가구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제약하기 때문에 개별 가구의 욕구 및 특성이 반영할 수 없고 그 결과 그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제이·고경표, 2017). 이처럼 출산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청년들의 소득불안정성 확대가 나타나면서 결혼 및 출산기피현상이 증가하여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반면 1990년대까지 대표적 저출생 국가였던 프랑스는 2000년대 초반 부모들이 자녀 양육과 투자에 대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보육정책 변화를 통해 출산율 제고에 성공한 사례로 꼽힌다(신윤정 외, 2014). 이러한 사례를 통해 자유로운 양육 환경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제공하는 것이 출산 증가에 기여할 수도 있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또한 현금지원방식은 기존의 서비스나 바우처와 같은 현물 지원방식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 소득을 보전해주는 효과도 있어서 청년세대 소득양극화 완화를 통해 출산율 제고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실제로 박선권(2019)은 청년들의 만혼이나 비혼 추세보다 소득양극화가 출산율 저하에 주요 원인을 지적한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기본소득과 같은 현금성 복지정책이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출산율 제고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최한수, 2017; 윤희식, 2018).

이에 본 연구는 무조건적이고 보편적인 방식으로 청년 모두에게 제공하는 대표적 현금중심 소득보장제도인 청년기본소득을 활용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모의실험해보고자 한다. 물론 청년기본소득제와 같은 보편적 소득제도는 소득보장을 통해 청년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 출산율 제고를 담보하는 것이 그 주요 목적이 아니다. 그러나 과연 현 청년세대들이 안고 있는 사회구조적 문제를 소득보장을 통해 완화해줄 때 출산율 제고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기본소득과 같은 현금지원제도의 간접적 파생효과 중 하나로 출산제고 효과가 나타날지 파악해 보는 것도 저출생 완화방안을 모색하는데 의미 있는 연구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서울시의 청년수당 대상 연령인 19~34세를 청년계층으로 설정하고 이들에게 개인당 모두 월 50만원씩의 청년기본소득을 제공한다고 가정할 때, 해당 기혼가구 여성들의 출산의사에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모의실험(microsimulation) 방식을 통해 분석하였다. 청년층에서 나타나는 저출생 문제는 물론 결혼률 하락에 기인하는 측면이 많긴 하나, 본 연구는 현금지원으로 인한 소득증가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혼인이라는 사건이 이미 발생하고 출산 사건을 기대할 수 있는 청년층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II. 선행연구 검토

국내·외를 막론하고 기본소득이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전무하나, 다양한 현금방식의 출산지원책들이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연구들은 다수 존재한다. 물론 이 연구들은 본 연구 대상인 기본소득과 도입 목적에 있어 사뭇 차이가 있긴 하나, 보편적인 현금 지원제도라는 점에서 그 궤를 같이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금중심의 출산지원금 제도들의 출산의사에 미치는 효과를 검토해 보았다.

우선 해외 연구사례를 검토해보면 Milligan(2005)은 캐나다의 퀘벡 주에서 1988년부터 1997년까지 시행한 출산장려금(Allowance for Newborn Children)제도의 출산율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본 연구 결과 특히 자녀가 없는 여성보다는 이미 한 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여성에게서 더 높은 출산율 증가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현금지원제도가 없는 타 지역의 여성들과 비교했을 때도 현금지원제도가 있는 지역에서 자녀가 없는 여성보다 자녀가 한명 있는 여성이 추가로 자녀를 출산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더불어 두 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그 가능성은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호주의 아동수당(Baby Bonus)을 통해 여성의 출산의사를 파악한 Drago et al.(2009)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해당 연구 결과 현금지원제도가 출산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본 연구에서도 첫째 아이 출산의사보다 추가로 자녀를 계획하는 데 더 긍정적으로 나타나서 현금지원제도가 다자녀 가구를 이루는데 보다 긍정적인 기제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이와 유사한 결과는 Lappegård(2010)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해당 연구에서는 자녀를 하나 혹은 둘을 두고 있는 부모들만을 대상으로 출산휴가, 정부지원 보육시설, 보육수당 등 각각의 노르웨이 출산정책이 출산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보육수당이 도입되던 시기에 그 이전과 비교할 때 둘째 자녀 출산이 증가하였으며, 보육수당은 셋째 자녀 출산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도 몇몇 연구들이 현금성 지원제도가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최준욱·송헌재(2010)는 현금지원제도 중 하나인 출산장려금 제도를 활용하여 출산력 제고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분석 결과 출산장려금이 100만원 증가할 때 출산의사가 평균 2.12% 높아지며 특히 현재 1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 둘째 자녀 계획 확률이 6.2%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석환(2014)도 230개의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출산장려금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해당 연구 결과에서도 출산장려금을 제공받을 때 첫째와 둘째 자녀의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해당 연구에서는 출산장려금이 셋째 자녀 이상의 추가 출산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처럼 국내·외를 막론하고 출산장려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현금 지원제도를 검토한 결과 다수의 연구들에서 출산율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의 선행연구 결과에서 현금성 지원제도가 첫 자녀 출산에 미치는 효과보다는 오히려 둘째자녀 이상의 추가자녀 출산에 상대적으로 더 효과적임을 밝히고 있는데 주목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목격되는 이유 중 하나로 강영주·최지민(2018)의 연구결과에서 밝혔듯이 대부분의 기존 출산장려책이 자녀 출산 이후부터 주어지는 혜택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조심스레 추측해보았다. 2019년 3분기에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0.88로 나타나고 있는데,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가장 적절한 자녀수가 1.2명(한국경제연구원, 2018. 7. 5)으로 나타나는 현실을 볼 때 과연 이처럼 출산이후에나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원제도가 사회전체적인 출산율 증가에 얼마나 크게 기여할지 의문이 들었다. 물론 최준욱·송헌재(2010)의 연구에서는 출산장려금이 둘째 자녀 출산뿐만 아니라 첫 자녀 출산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오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긴 하나, 해당 연구결과는 출산장려금이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로 출산장려금이 실제로 영향을 주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본다. 실제로 연구자들도 이러한 점을 한계로 들었다.

더불어 현재 출산장려금과 같은 일회성 현금 지원제도는 청년들에게 출산유인을 크게 제공하지 못할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노동시장 이중화와 구조적 실업으로 인해 청년들이 소득불안정 문제를 겪으면서 결혼 및 출산을 꺼리는 추세가 점차 장기화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시적 현금지원제도가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심하는 연구결과들까지 등장하고 있다. 우선 2005년부터 2009년에 걸쳐 서울시 25개의 자치구를 대상으로 출산장려금의 영향을 살펴본 석호원(2011)의 연구에서는 출산장려금의 제공이 출산율 제고를 유도하지 못한다고 밝히고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출산장려금이 45~49세를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45~49세의 여성들에게는 오히려 부(-)의 효과까지 나타났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이승주·문승현(2017)의 연구에서도 출산장려금 제공 여부에 따라 출산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달라지지 않는 것으로 밝히고 있어, 출산장려금과 같은 현금성 지원제도가 출산율 제고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

된다.

아울러 현행 대부분의 출산제도가 양육방식에 대한 수급자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제약하기 때문에 그 정책효과가 반감될 수 있음을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유해미 외(2011)는 보육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 주는 현금지원제도인 양육수당의 효과를 살펴보았는데, 해당 양육수당은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고 시설 미이용 가구에만 지급된다. 이런 측면에서 다른 출산장려책보다 상대적으로 사용의 자율성이 보장된다. 흥미롭게도 해당 연구결과에서는 양육수당 증액 시 추가적으로 출산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현재 이처럼 제한이 덜한 양육수당을 현금으로 받고 있는 수급자의 28.3%가 추가출산의사가 있다고 답변한 반면,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양육수당을 받지 못하는 가구의 경우 더 낮은 23.4%만이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일련의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판단해 보건데 지속적이고 무조건적이며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현금지원제도가 도입될 경우 기존의 출산정책들보다 출산율 제고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효과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결혼과 출산에 대한 추이는 청년층의 경제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이런 맥락에서 지속적이고 아무런 조건도 제약도 없는 동시에 소득양극화 문제까지 완화해 준다고 주장하는 대표적 현금지원제도인 기본소득을 활용해 과연 출산율이 제고되는지 가늠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출산은 대부분 20세에서 34세까지의 여성에서 가장 활발하게 나타나게 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대상인 만 19세~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현재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 수준인 매월 50만원을 지금 운영형태와 달리 무조건적이고 보편적인 형태의 청년기본소득으로 제공한다고 가정할 때 출산의사에는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추정해 보았다.

Ⅲ. 연구모형

기본소득이란 모든 사람에게 자산조사 없이 근로를 반대급부로 요구하지도 않은 채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현금급여를 의미한다(Standing, 2017). 따라서 기본소득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본적인 특징을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

첫째로 어떠한 현금성 소득지원제도가 기본소득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보

편성(universality)을 지녀야 한다. 이 보편성이란 기존 선별적 복지제도와 달리 자산조사를 하지 않고 수혜집단을 한정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제공되어야 한다는 특성을 의미한다(Van Parijs, 2006). 바로 이 점이 기존의 선별적 복지제도와 다른 점인데, 현행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본소득을 비교하면, 전자는 자산조사를 통해 일정소득 이하의 가구에만 지급하지만 후자는 개인의 자산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수급권이 발생한다는 데서 차이가 있다. 또한 기본소득은 수혜집단을 한정하지 않고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물론 기본소득의 대상을 국민만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까지 포함하여 좀 더 포괄적으로 정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다만 Van Parijs(1995)는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대부분의 국가들이 세금을 부과하고 일정한 기본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으로 한정하여 기본소득을 제공한다는 것은 기본소득을 기본권으로 해석하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보았다. 한편 엄격한 의미에서의 보편적 기본소득을 논의할 때는 어떠한 인구·사회학적 기준이라 할지라도 이를 통해 수급범위를 한정하는 것도 보편성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윤홍식, 2017). 다만, 기본소득의 핵심적인 특성 중 하나가 노동을 반대급부로 요구하지 않는 무조건성에 있다고 볼 때, 이 무조건성은 그 주요 정책대상이 아동이나 노인보다는 근로가능연령의 인구집단임을 시사하고 있다고 본다. 특히 Offe(1997)는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연령집단에 대한 소득보장이 기본소득의 핵심목표가 아님을 밝히고 있어, 이를 기초로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으로 삼은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층만으로 대상 집단으로 하고 있지만 그 대상 집단 안에서 자산조사없이 모두에게 제공되기 때문에 기본소득의 보편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았다.

둘째, 기본소득은 소득과 노동 간의 완전한 독립을 의미하는 무조건성(unconditionality)을 특징으로 한다(Offe, 2009). 이러한 무조건성은 기본소득이 시민권에 기초한 권리적 측면의 소득보장제도라는 점에서 가장 핵심적인 특성으로 꼽는다(Van Parijs, 2006; Raventos, 2007). 기본소득은 다양한 이념적 성향이나 도입 취지에 따라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예컨대, 우파의 기본소득은 주로 음의소득세(NIT), 최소보장소득(Guaranteed Minimum Income) 등으로 불리고, 좌파의 기본소득은 주로 사회수당(Demogrant)나 시민소득(Citizen's Income) 형태로 발현된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기본소득 논의에서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특성이 바로 이 무조건성(unconditionality)이다. 우파 진영에서 제안하는 기본소득 모형들이 기본소득을 제공함으로써 근로유인을 강화하는 것을 핵심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나(Fitzpatrick, 1999), 그렇다고

해서 우파 기본소득 모형에서 노동을 기본소득의 수급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지는 않다. 대표적인 보수주의 학자인 Friedman(1962)이 제안한 음의소득세(NIT)에는 근로유인이 더 강화되는 기제가 포함되어 설계되긴 하였으나, 수급자가 노동을 반드시 제공해야할 의무는 부과되진 않았다. 마찬가지로 Murray(2006)도 21세 이상의 성인에게 일시불로 제공하는 기본소득 형태를 제안하면서 이들에게 노동을 반대급부로 요구하지는 않았다. 반면 현행 서울시 청년수당의 경우는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수당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당을 제공받는 수급자들로부터 활동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서울시 청년수당은 엄밀한 의미에서 기본소득의 형태로 간주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 상정하는 연구모형은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급 액수와 청년수당 지급대상인 18~34세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만 유사할 뿐, 노동의무 조건을 부과하지 않는 기본소득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모형이라는 점에서 서울시 청년수당과 다른 제도임을 밝혀둔다.

마지막으로 기본소득은 수급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실질적 자율성을 보장해줄 만큼의 급여의 충분성(Sufficiency)을 원칙으로 한다(Van Parijs, 2006). 이러한 충분성은 주로 최저생계비 수준이나 중위소득 50% 정도의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한다(Widerquist et al., 2013).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청년기본소득의 경우 현행 우리나라 1인 가구 생계급여 수준인 50만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상정하였다. 청년의 삶의 질을 조사한 조사결과(한국고용정보원, 2017. 8. 10)에 따르면 대학생의 경우 월평균 용돈과 월평균 지출액이 각각 32만원, 60만원으로 나타났다. 취업준비생의 경우도 월평균 용돈은 28만원, 월평균 지출액은 65만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50% 이상의 청년들이 용돈과 지출액 사이에 부족한 비용을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마련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월 50만원을 제공한다는 것은 청년들이 아르바이트에 투자하는 시간을 줄이고 자기개발을 위해 좀 더 하고 싶은 활동에 투자할 수 있는 적절한 액수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물론 최저생계비나 중위소득 50% 수준에 미치지지는 못하지만 충분성을 어느 정도 만족한다고 보았다. 이 월 50만원 수준의 적절성은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2018) 연구보고서에서도 나타났는데, 2017년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에 참여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청년수당의 제공 수준이 현행 50만원이 적절하다는 답변이 64.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종합하면 월 50만원이 청년기본소득 지급 시 청년들이 인간다운 삶을 충분히 누리기엔 다소 부족하긴 하나 이들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최소비용이라는

측면에서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청년기본소득을 상기의 기본소득 핵심 특성들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는 모형으로 설계하고자 하였다. 특히 현행 서울시나 성남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수당 제도의 경우 개인에게 지급된다는 점에서는 기본소득의 특성을 잘 담아내고 있으나, 두 제도는 신한은행 카드로 지급되어 사업취지에 맞지 않는 사용처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도록 제한을 두거나 성남사랑 상품권이나 전자카드를 활용한 지역화폐로 지급하기 때문에 현금성 소득보장제도로써의 기본소득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의 청년기본소득 모형은 Van Parijs(2006), Raventos(2007), Widerquist et al.(2013) 등이 기본소득의 특성으로 언급하고 있는 “개인단위(individual)”로 지급되는 “현금(cash-based)” 소득보장제도로써의 특성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표 1〉 본 연구에서의 청년기본소득 모형 특성

구 분	내 용		
기본소득 핵심원칙과의 합치성	보편성	자산조사	자산조사 없음
		대상의 보편성	19세~34세 모든 청년(제한적 보편성)
	무조건성		노동 조건 없음
	충분성		현행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수준과 동일 (충분성 어느 정도 만족한다고 판단)
	개인단위		개인당 지급 원칙
	현금지급		정기적으로 현금 지급
수급대상	전국 만 19세~34세 청년		
수급인구	10,982,629명		
수금액	개인당 월 50만원		
예산규모	연간 65조 8957억 원		

〈표 1〉은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상정한 청년기본소득 모형의 특성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있다. 우선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을 2019년 기준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대상 연령과 같은 만 19세에서 34세로 가정하였다. 다만 서울시 청년수당의 경우 서울시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이는 기본소득의 보편적 성격에 반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해당 연령을 만족하는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기본소득을 제공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따라서 총 수급 대상자는 2018년 인구조사 기준으로 총 10,982,629명이고, 개인당 매월 50만원씩 지급한다고 할 때 년 간 대략 66조의 예산이 필요하다.

또한 실제로 기본소득이 시행된다고 할 경우 다르게 운영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기본소득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는 소득이나 자산에 상관없이 19세에서 34세까지의 모든 청년들에게 똑같은 금액의 비근로소득이 추가로 발생한다고 할 때 세금을 부과하면 이를 통해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대체효과를 제거하여 순수하게 소득증가가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추정해보고자 하는 목적에서이다.

IV. 분석

1. 연구자료 및 분석대상

본 연구를 위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조사한 「여성가족패널」 5~6차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청년기본소득을 제공할 때 혜택 대상인 20-30대 초반 기혼여성들에게서 출산의사의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구사회학적 정보와 소득정보와 함께 이들의 향후 출산의사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다. 「여성가족패널」에서는 가구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금융소득 및 부동산 소득, 이전소득 및 기타소득 등으로 세분화하여 제시함과 동시에 여성들의 향후 출산의사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청년기본소득의 출산율 효과를 예측해 보기에 바람직한 자료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기본소득 대상은 2019년부터 바뀐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대상 연령인 만 19세부터 34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가정하고 있으나, 「여성가족패널」에서는 21세 이상의 여성만 자료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21세부터 34세까지의 여성들이 표본에 포함되었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매달 50만원의 현금이 지원될 경우를 상정하여 이들의 출산의사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모의실험을 통해 예측하였다.

〈표 2〉 표본집단의 일반적 특성(n=593)

(단위: 세, 만원, %)

구분(연속형)	평균	표준편차	구분(범주형)	비중	
연령	31.62	2.43	교육수준	고졸 이하	27.15
				전문대졸 이상	72.85
			남편 교육수준	고졸 이하	24.79
				전문대졸 이상	73.19
남편 연령	35.58	4.56	취업상태	모름	2.02
				임금	35.58
가구총소득 (월)	411.08	325.38	18세미만 자녀수	비임금	7.76
				무직	56.66
			18세미만 자녀수	무자녀	16.36
				1명	30.69
			2명이상	52.95	

〈표 2〉는 표본의 일반적인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표본집단으로 추출한 만 21세-34세 기혼 여성들의 평균연령은 31.62세였으며, 남편 평균연령은 그보다 다소 높은 35.58세로 나타났다. 이들 가구의 18세 미만 자녀 수는 2명 이상인 경우가 52.9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1명인 경우가 30.69로 그 다음으로 많았고, 기혼여성의 가구 중 무자녀인 가구의 비중은 16.36%에 그쳤다. 이들 표본가구의 월 총소득의 평균은 대략 411만원이었다. 다만, 본 연구에서 분석에 활용된 「여성가족패널」 5~6차 자료에서 9명의 여성이 임금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수준이 결측으로 제시되어 있어 이들의 임금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구하여 이로 대체하였다. 표본 여성들의 교육수준은 고졸이하가 27.15%, 전문대졸 이상이 72.85%로 고졸이하 여성보다는 전문대졸 이상의 여성이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한편 남편의 교육수준도 고졸이하가 24.79%, 전문대졸 이상이 73.19%로 전문대졸 이상의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해당 표본 집단의 여성 중 무직인 여성이 56.6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뒤로 현재 직장에서 임금을 받고 근무하는 임금근로자 여성이 35.58%, 비임금근로자¹⁾ 여성이 7.76% 순이다.

1) 본 연구에서 비임금근로자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와 같이 자영업자, 프리랜서,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하는 개념임.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확률적 효용함수(random utility function)를 활용해 청년 기본소득 대상 기혼여성들의 출산의사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때 출산의사는 연속변수 형태가 아니라 “출산의사없음, 모름, 출산의사있음”의 이산형 형태의 변수로 이루어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산선택모형을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산선택모형에서의 출산의사 f_k 는 다음 식 (1)과 같이 나타낸다.

$$f = \begin{cases} f_1, & \text{if } f_k = \text{출산의사없음} \\ f_2, & \text{if } f_k = \text{모름} \\ f_3, & \text{if } f_k = \text{출산의사있음} \end{cases} \quad (1)$$

이처럼 미래출산의사 f 는 범주형 변수로 나타낼 수 있고, 각 여성의 선택은 “출산의사없음(f_1), 모름(f_2), 출산의사있음(f_3)”으로 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기본소득 제공 시 기혼여성들에게서 출산의사(f) 선택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려고 다음과 같은 순서로 분석을 하였다.

우선 청년기본소득이 지급되면 여성들은 다른 요인들과 함께 고려할 때 자신의 효용이 가장 극대화되는 조건에서 현재의 출산의사를 고수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선택을 반복할 것인지를 결정한다고 가정하였다. 이에 여성의 출산의사를 결정하는 개인 효용함수를 설정하였는데, 이때 여성 개인의 효용함수를 추정하기 위한 설명변수로는 보육비(c), 개인소득(y), 여성 개인의 소득을 제외한 가구소득($otherinc$), 연령(age), 교육수준(edu)을 활용하였다. 이후 도출된 개인효용함수를 기초로 청년기본소득 지급 시 출산의사의 변화를 추정하게 된다.

개인효용 추정을 위한 효용함수로는 확률효용모형(random utility model)을 활용하였다. 식 (2)는 확률효용함수를 수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U_k^* 는 출산의사 f_k 를 선택했을 때의 확률적 효용을 나타내는 함수로, 아래 식에서 $U(f_k|X)$ 는 선택한 출산의사 f_k 하 개인특성 변수를 통해 측정된 효용(measured utility)이다. ϵ_k 는 오차항으로 측정오차와 관찰되지 않는 오차를 포함하며, 독립적이고 무작위로 구해진다고 가정하였다.

$$\begin{aligned}
 U_k^* &= U(f_k|X) + \epsilon_k \\
 &= U_k + \epsilon_k
 \end{aligned}
 \tag{2}$$

출산의사가 결정되었을 때 효용극대화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U_k^* \geq U_j^* \text{ for all } j \text{ (} k \neq j \text{)}
 \tag{3}$$

그리고 식 (3)에서 U_k^* 대신 식 (2)를 대입하면 다음과 같은 식을 도출할 수 있다.

$$\epsilon_j \leq \epsilon_k + U_k - U_j \text{ for all } j
 \tag{4}$$

이때 특정 ϵ_k 하에서 효용극대화 U_k^* 를 달성할 확률은 $\epsilon_k + U_k - U_1 \geq \epsilon_1$, $\epsilon_k + U_k - U_2 \geq \epsilon_2 \dots$ 등 모든 j 에 대한 결합 확률과 같기 때문에, 특정 오차항 ϵ_k 에서 출산의사에서 f_k 를 선택했을 때 효용극대화 확률은 아래와 같다.

$$\Pr(f^* = f_k | \epsilon_k) = \prod_{j \neq k} \Pr(\epsilon_j \leq \epsilon_k + U_k - U_j)
 \tag{5}$$

식 (5)는 오차항 ϵ_k 가 주어질 때의 조건부 확률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확률변수인 오차항 ϵ_i 의 분포가 Type I Extreme Value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였다. Type I Extreme Value 분포 하에서 식 (5)는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확률변수인 오차항 ϵ_k 와 무관하게 측정된 U_j 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식 (6)에서 J 는 선택가능한 범주 개수이다. 본 논문에서는 출산관련 의사는 3가지이므로 $J=3$ 이 된다.

$$\Pr(f^* = f_k | \epsilon_k) = \frac{\exp(U_k)}{\sum_{j=1}^J \exp(U_j)}
 \tag{6}$$

출산여부를 결정하는 개인의 효용함수(U)는 출산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는 보육비용(c), 개인소득(y)과 출산여부 선택과 무관하게 나타나는 개인의 고유한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들(z)로 구성된다.

$$U = U(c, y; z) \quad (7)$$

식 (7)에서 효용함수를 선형함수 형태로 가정하면 간단하긴 하나, 한계효용이 일정하다는 비현실적 가정으로 현실설명력이 떨어진다(Creedy & Kalb,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효용함수를 이차함수 형태로 가정하였다. 이처럼 이차함수 형태로 가정하는 경우 선형함수보다 제약이 덜하기 때문에 통상 효용함수의 경우 이차함수(Quadratic) 형태의 함수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Van Soest, 1995)

$$U(c, y, z) = \beta_{c1}c + \beta_{c2}c^2 + \gamma_{y1}y + \gamma_{y2}y^2 + \tau_{cy}(c \times y) + z \quad (8)$$

식 (8)의 효용함수를 통해 개인($i=1,2,3,\dots, n$)은 $j=1$ (출산의사없음), 2 (모름), 3 (출산의사있음)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이처럼 개인 i 의 출산의사 선택 확률은 다음과 표현된다.

$$\Pr_i(f_j) = \Pr_i\left(f_j \mid \sum_{j=1}^3 f_j = 1\right) = \frac{\exp\left(\sum_{j=1}^3 f_{ij}X_{ij}\beta\right)}{\sum_{d_j} \exp\left(\sum_{j=1}^3 d_{ij}X_{ij}\beta\right)} \quad (9)$$

식 (9)에서 d_i 는 i 의 출산의사 선택을 나타내는 더미변수이다. 즉, 각 개인(i)은 $d_1=(1,0,0)$ 의 조합으로 표현되며, 이 경우 개인 i 는 “출산의사없음”을 선택하게 된다. 반대로 d_2 는 $(0,1,0)$ 의 조합으로 “모름”을, d_3 는 $(0,0,1)$ 의 조합으로 “출산의사있음”을 선택한다. 이러한 개인의 확률에 로그를 취하면 로그우도기여(log likelihood contribution)를 띠게 되고, 전체 표본에 대해 최대우도추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법에 따라 효용극대화 시 계수값(β)을 추정할 수 있게 된다.

$$\operatorname{argmax}_{\beta} = \sum_{i=1}^n \ln\left(\Pr_i\left(f_{ij} \mid \sum_{j=1}^3 f_{ij} = 1\right)\right) \quad (10)$$

이렇게 β 값을 추정하기 위한 함수식은 조건부 로짓모형(Conditional Logit)으로 추정하는 것과 같다. 이처럼 조건부 로짓으로 추정하기 위해서는

p가 어떤 출산의사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다른 값을 갖는 alternative-specific 변수와 선택과 상관없이 개인의 특성마다 고유하게 주어지는 case-specific 변수를 설정해야 한다(Cameron & Trivedi, 2010). 상기에서 여성 개인의 효용함수를 추정하기 위해 설정한 설명변수 중 보육비(c)와 개인소득(inc)은 alternative-specific 변수로, 여성개인의 소득을 제외한 가구소득(y) 연령(a), 교육수준(e)은 case-specific 변수로 설정하였다. 이때 조건부 로짓모형에서 개인의 출산의사의 변화 시 달라지는 보육비와 여성의 개인소득은 alternative-specific 변수로 독립적으로 회귀식에 포함되나, 출산의사 선택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개인특성 변수인 case-specific 변수들은 독립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alternative-specific 변수에 각각 곱하여 교차항으로 구성하여 활용한다(Creedy & Kalb, 2005; Cameron & Trevedi, 2010).

〈표 3〉 유자녀 가구의 월평균 자녀 양육비용 지출액

(단위: 만 원, 명)

1자녀가구	유치원·어린이집	공교육	사교육	돌봄	기타	총액
30세미만	3.4	0.1	2.1	4.1	36.9	46.5
30-34세	5.4	0.4	6.8	9.7	38.5	60.8
취업	4.5	6.1	23.0	10.0	37.3	80.8
비취업	4.1	5.2	17.7	1.0	35.9	63.9
2자녀가구	유치원·어린이집	공교육	사교육	돌봄	기타	총액
30세미만	11.7	0.7	9.0	4.6	54.9	80.9
30-34세	13.6	1.4	16.7	8.3	56.0	96.0
취업	4.3	22.7	47.0	4.8	65.2	144.1
비취업	6.5	16.7	43.9	0.9	60.1	128.1
3자녀가구	유치원·어린이집	공교육	사교육	돌봄	기타	총액
30세미만	11.3	0.7	17.9	2.8	67.4	100.1
30-34세	14.7	3.4	27.0	6.4	69.8	121.3
취업	4.1	28.1	56.5	3.4	76.8	168.7
비취업	6.9	18.6	51.1	0.8	75.2	152.5

출처: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성이 출산을 선택할 경우 필연적으로 보육비가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해당 변수를 alternative-specific 변수 중 하나로 선정하였다. 여성의 출산의사 선택 결과에 따라 변화하는 보육비를 산정해야 한다. 2018년 기준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녀 하나를 둔 19세에서 30세 미만의 기혼여성 가정의 월평균 보육

료 총액은 46.5만원이었고, 30~34세 기혼 여성 가정의 월평균 보육료 총액은 60.8만원으로 대략 14만원 차이가 났다. 또한 만 19세~49세 전체 응답자를 기준으로 여성이 취업상태에 있는 가구의 경우 월평균 보육료가 80만 원가량 들었던 반면, 여성이 전업주부인 가구는 월평균 63.9만원 보육료가 들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장여성 가구의 돌봄비용이 전업주부 가구보다 월평균 9만원가량 높게 나타나 두 집단 간에 돌봄서비스 비용에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자녀가 2명인 가구의 보육비 총액은 여성이 30세 미만인 가구의 경우 80.9만원, 여성이 30~34세인 가구의 경우 96만원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3자녀 가구의 경우 여성이 30세 미만인 가구의 경우 100.1만원, 30~34세인 경우는 121.3만원의 보육비가 드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의 2018년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기존에 자녀가 없는 임금근로자 여성이 출산을 선택하는 경우 1자녀 가구의 보육료를 기준으로 30세 미만은 46.5만원, 30~34세 여성의 경우 60.8만원의 보육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출산력 실태조사 결과 미취업 여성가구의 보육비 수준이 자녀수에 따라 다소 차이나긴 하나 직장여성과 비교할 때 대략 평균 80%에 그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육료를 추정할 때 계산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무직·비임금근로자 여성이 출산의사가 있음을 선택할 때 각각 46.5만원, 60.8만원의 80% 만큼의 보육비가 증가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임금근로자 중 시간제근로자 여성이 “출산의사있음”을 선택할 때 전일제의 90% 수준에서 보육비가 발생한다고 가정하였다. 아울러 기존 1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여성이 추가로 출산을 결정하는 경우 자녀수가 둘로 증가하므로 30세 미만의 여성은 2자녀 가구의 보육료 총액인 80.9만원, 30~34세 여성은 96만원의 보육비가 각각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반면 기존 1자녀 가구의 여성이 추가 출산의사가 없는 경우는 1자녀 가구와 동일하게 보육비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무자녀 기혼여성 때와 마찬가지로 “출산의사있음” 선택 시 시간제근로자인 여성은 전일제근로자의 90% 수준에서, 무직·비임금근로자인 여성의 경우는 전일제근로자의 80% 수준에서 보육비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현재 2자녀를 두고 있는 여성이 “출산의사있음”을 선택 시 보육비는 3자녀 가구의 보육비를 적용하였으며, “출산의사없음”을 선택하는 경우는 2자녀인 경우의 보육비를 적용하였다. 출산의사에 대해 “모름”을 선택한 경우 계산의 편의를 위해 출산의사가 50%정도 있는 것으로 가정하여 “출산의사있음”을 선택한 경우 추가로 증가하는 보육비의 50%만 기존 보육비에 추가하였다. 예컨대 기존 자녀수가 0명이고 출산의사 “모름”을 선택한 경

우 여성이 30세 미만이면 46.5만원의 50%만 증가하고, 30~34세의 경우 60.8만원의 50%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기존에 자녀수가 1명인 경우 출산의사에서 “모름”을 선택할 때 여성의 연령이 30세 미만이면 자녀 1명일 때의 보육비인 46.6만원에 자녀 2명일 때 보육비인 80.9만원에서 46.6만원을 뺀 차액의 50%를 더하여 보육비를 산정하였다. 추가로 여성의 연령이 30~34세인 경우는 60.8만원에다 96만원에서 60.8만원을 뺀 금액의 50%를 더하였다.

〈표 4〉 출산 선택 시 발생하는 보육비 추정치(c)

(단위: 만원)

현 자녀수	연령	노동공급 유형	출산 의사	보육비	현 자녀수	보육비	현 자녀수	보육비
0명	30세 미만	전일제	없음	0	1명	46.5	2명	80.9
			모름	23.25		63.7		90.5
			있음	46.5		80.9		100.1
		시간제	없음	0		41.85		72.81
			모름	20.925		61.98		81.45
			있음	41.85		72.81		90.09
		무직·비임금	없음	0		37.2		64.72
			모름	18.75		60.26		72.4
			있음	37.2		64.72		80.08
	30~34세	전일제	없음	0		60.8		100.1
			모름	30.4		78.4		108.65
			있음	60.8		96		121.3
		시간제	없음	0		54.72		90.09
			모름	27.36		70.56		97.785
			있음	54.72		86.4		109.17
		무직·비임금	없음	0		48.64		80.08
			모름	24.32		62.72		86.92
			있음	48.64		76.8		97.04

아울러 임금근로자인 여성의 경우 출산을 선택할 경우 출산과 동시에 출산 휴가나 육아휴직 등으로 인해 기존에 받아오던 소득수준을 유지하기 어렵다.2)

2) 현실에서는 프리랜서와 같은 개인사업자인 여성의 경우도 출산으로 인해 소득감소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2019년 7월부터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보험 미적용자인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들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출산급여를 제공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개인사업자가 총 표본 중 10명밖에 안되고, 또한 개인별·직종별로 소득감소분 편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바 분석 상 편의를 위해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업주부와 마찬가지로 출산으로 인한 소득감소분을 고려하지 않았다.

출산휴가의 경우 최대 3개월까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상당액을 받기 때문에 기존 소득을 어느 정도 보전할 수 있다고 하나, 출산휴가 이후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경우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150만원 한도로 통상임금의 80%까지만 받을 수 있고, 이후 4개월째부터는 120만원 한도로 통상임금의 50%만 제공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녀 출산 직후부터 12개월을 기준으로 할 때 매월 평균적으로 임금근로자 여성의 경우 기존 임금의 70%정도밖에 받지 못한다고 가정하고 해당 비율만큼의 소득감소를 임금에 반영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출산 시 여성의 소득 감소분은 다음과 같다. 임금근로자 여성이 출산 직후 최초 3개월의 출산휴가 동안에는 임금의 100%를 받는 것으로 보았다. 그 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3개월 동안 기존 임금의 80%, 나머지 6개월 동안은 기존 임금의 50%를 받게 된다. 따라서 이를 12개월을 기준으로 할 때 1년 동안 평균 매월 출산 전 임금의 70%를 받는 셈이다. 물론 출산휴가 이후 육아휴직의 경우 최초 3개월 동안은 150만원, 이후 6개월은 120만원을 상한선으로 하고 있다. 그 결과 만약 출산 전 직장여성의 월 소득이 187.5만원 이상이라면 출산휴가 시작 후 최초 3개월 동안은 150만원, 그 후 6개월 동안은 120만원을 받게 된다. 이를 12개월을 기준으로 모두 더해 12개월로 나눠줌으로써 출산의사가 있는 경우 월평균 소득으로 산정하였다. 또한 소득 변화분의 경우도 보육비와 마찬가지로 출산의사 선택 중 “모름”을 선택한 경우, “출산의사있음”을 선택한 여성과 비교할 때 소득감소분이 50%정도에만 그친다고 보았다. 따라서 기존 187.5만원 이하의 소득을 버는 여성은 출산의사 선택 중 “모름”을 선택할 경우 월평균 기존소득의 85% 정도의 소득을 버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반면 187.5만원 이상의 소득을 버는 여성의 경우는 3개월 동안 기존소득에서 150만원을 뺀 액수의 50%, 나머지 6개월 동안 기존소득에서 120만원을 뺀 액수의 50%를 모두 더하고 이를 12개월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에 추가로 더해주었다.

상기에서 계상된 여성 개인소득을 제외한 가구소득은 분포의 정규성과 다른 변수들과의 단위수를 고려해 로그화하였고, 여성 개인소득의 경우는 10으로 나누어 10만원 단위로 변환하였다. 특히 가구소득을 로그화할 때 해당 변수의 값이 0인 경우 모두 결측치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변수 값에 모두 1을 더한 후 로그화하였다. 이후 alternative specific 변수인 개인소득(y)과 보육비(c), 그리고 case-specific 변수인 여성본인소득 이외 가구소득($otherinc$), 연령(age), 교육(edu)변수를 사용해 각 개인의 효용함수를 추정한 후, 그 추정된 효용을 기초로 청년기본소득 지급 시 출산의사 선택과 관련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다만 Becker와 Lewis(1973)는 자녀의

수와 자녀 보육의 질이 상호작용하는 부모의 효용함수를 상정하여, 소득과 자녀 수 사이에 반드시 정(+)의 관계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을 밝혔다. 즉,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 보육의 질이 높아져 자녀를 양육하는데 드는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미 자녀가 있는 부모의 경우 소득이 증가한다고 반드시 자녀수가 증가한다고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기본소득을 제공할 때도 이미 자녀가 있는 가구의 여성은 기본소득을 통해 경제적 유인이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출산의사를 바꾸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추가적으로 자녀수(child)를 조건부 로짓모형에 포함시켜 자녀수의 효과를 통제한 분석결과를 추가적으로 분석하여, 자녀수의 효과를 통제하지 않았을 때 기본소득 제공으로 인한 기혼여성의 출산의사 변화와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해보았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여성가족패널」 5~6차 자료를 병합(merge)하여 분석에 활용하였기 때문에, 동일한 개인 내에 시간에 걸쳐 오차항이 상관되기 쉽다. 같은 그룹 내 상관관계를 고려한 표준오차를 계산하였고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 조건부 로짓모형 추정결과

변 수	모형1(자녀수변수제외)		모형 2(자녀수변수포함)	
	추정계수	Robust S.E	추정계수	Robust S.E
개인소득(y)	-.129	.323	.180	.631
개인소득제곱(y ²)	-.001	.001	-.001	.002
개인소득(y)×여성개인소득 이외 가구소득(otherinc)	.006	.024	.002	.037
개인소득(y)×연령(age)	.008	.009	-.005	.021
개인소득(y)×교육수준(edu)	-.149	.101	.042	.119
개인소득(y) × 보육비(c)	.014***	.003	-.006	.007
개인소득(y)×자녀수(child)	-	-	-.0245	.086
보육비(c)	1.091***	.412	3.436***	.879
보육비제곱(c ²)	-.106***	.020	.125***	.036
보육비(c)×연령(age)	.012	.011	-.128***	.026
보육비(c)×교육수준(edu)	-.001	.052	.490***	.180
보육비(c)×여성개인소득 이외 가구소득(otherinc)	-.004	.037	.039	.070
보육비(c)×자녀수(child)	-	-	-1.813***	.228
Log pseudolikelihood	-521.277		-393.945	
Pseudo R ²	0.1944		0.3953	

***, **, *은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이렇게 조건부 로짓모형으로 추정한 여성의 효용함수들을 기초로 개인당 월 50만원씩 기본소득을 제공받아 개인소득(y)이 증가할 때 기혼여성의 출산의사에 어떠한 변화양상이 나타나는지를 모의실험(simulation)을 통해 살펴보았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기본소득 특성 상 분석대상인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 배우자의 경우도 19~34세의 연령에 해당하는 경우 청년기본소득 대상자에 해당하여 이들에게도 똑같이 50만원의 소득 증가가 나타난다고 가정하였으며, 이 경우는 여성개인소득 이외 가구소득 변수($otherinc$)에 포함시켜 효용함수를 추정한 후 모의실험(simulation)을 진행하였다.

V.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조건부 로짓모형을 통해 추정한 개인의 효용함수를 바탕으로 청년기본소득 제공 시 개인의 효용이 달라지면서 출산의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모의실험(simulation) 방식으로 예측하였다. 이때 모의실험의 과정은 이경희·민인식(2018)이 활용한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다음 순서와 같다.

우선 조건부 로짓을 통해 추정된 계수들을 사용해 각 출산의사 선택에 따른 효용값이 계산된다. 그 후 기혼여성의 출산의사 선택은 앞서 식 (2)와 (3)에 따르면 추정된 효용과 오차항의 값으로 이루어진 확률적 효용의 크기에 의해 결정되게 된다. 이때 오차항은 Type I Extreme Value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였으므로, 세 개의 오차항 조합이 추출되어 세 개의 출산의사 선택에 배정된다. 추정된 효용값과 오차항의 값으로 이루어진 확률적 효용값을 기초로 하여 효용극대화를 이루는 개인의 출산의사 선택과 실제 자료상에서 관찰된 출산의사 선택이 일치하면 해당 오차항의 조합을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다면 새로운 오차항의 조합을 추출해서 다시 세 개의 출산의사 선택에 배정한다. 이러한 과정을 무수히 반복하면 오차항 조합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확보한 오차항의 조합을 청년기본소득 제공 시에도 적용하여 확률적 효용값을 계산하고 이를 통해 출산의사여부 중 가장 효용이 높은 선택지를 택하게 만든다.

〈표 6〉, 〈표 7〉, 〈표 8〉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모의실험을 진행한 결과 청년기본소득을 제공받은 후 21~34세 기혼여성에게서 나타나는 출산의사 선택의 변화를 보여준다.

우선 전체 21-34세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자녀수 변수를 제외하고 조건부 로짓으로 효용을 추정 후 모의실험을 진행한 결과 청년기본소득을 제공받기 전에 출산의사가 없었던 여성 중 95.03%가 청년기본소득을 제공받은 후에도 여전히 출산의사가 없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해당 기혼여성들 중 단지 4.79%만이 청년기본소득을 제공받으면 향후 출산의사가 있음을 선택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청년기본소득을 제공받기 전에 출산의사에 대해 “모름”으로 답변한 여성들의 경우 단지 44.06%만이 청년기본소득 제공 후에도 “모름”이라는 답변을 유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 출산계획이 불투명하였던 여성은 기본소득을 제공받은 경우 출산의사를 보일 가능성도 컸지만, 반대로 출산의사가 없음을 선택할 확률도 비슷하게 크게 나타났다. 한편 기존에 “출산의사있음”을 선택하였던 여성의 경우 여전히 77.08%가 청년기본소득을 제공받은 후 “출산의사있음”을 선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기본소득을 제공받은 후 기존에 출산의사가 있음을 밝힌 여성들 중 11.08%는 “출산의사없음”을 선택하였고, 11.84%는 “모름”을 선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자녀수 변수를 조건부 로짓모형에 포함시켜 자녀수 효과를 통제 후 모의실험을 진행한 결과에서도 자녀수 효과를 통제하지 않았을 때와 대부분 경향성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기존 “모름”으로 답한 여성의 경우에는 많은 차이가 나타났다. 자녀수 효과를 통제 한 모형에서는 기본소득이 제공되기 전에 출산의사가 없었던 여성의 99.89%가 기본소득 제공 후 여전히 출산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에게서는 출산유인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기본소득 제공 전 출산의사가 불투명했던 여성들은 자녀수 효과를 통제하기 전보다 오히려 “출산의사없음”을 선택한 비율이 40.92%로 대략 11%p 이상 증가하였고, “출산의사있음”을 선택한 비율은 6.42%로 자녀수 효과를 통제하기 전보다 무려 20.2%p나 낮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녀수 효과를 통제한 모형에서도 기본소득 제공 전 향후 출산의사가 있음을 밝힌 여성들은 기본소득 제공 후에도 여전히 78.21%가 “출산의사있음”을 선택하여 자녀수 효과를 통제하기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자녀수를 통제하지 않았을 때보다 통제하였을 때 기존 “출산의사있음”에서 기본소득 제공 후 출산의사없음으로 변화하는 비중이 17.08%로 무려 6%p나 증가하였다.

〈표 6〉 청년기본소득 제공 후 출산의사의 변화(전체)

구 분		청년기본소득 개인 당 50만원 지급 후 출산의사						계
		모형1(자녀수 변수 제외)			모형2(자녀수 변수 포함)			
		없음	모름	있음	없음	모름	있음	
관찰된 출산 의사	없음	95.03	0.18	4.79	99.89	0.06	0.06	100
	모름	29.32	44.06	26.62	40.92	52.66	6.42	100
	있음	11.08	11.84	77.08	17.08	4.71	78.21	100

한편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는 비경제활동 여성의 경우도 21-34세 여성 전체를 대상으로 예측한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우선 자녀수를 통제하지 않은 모형 1에서는 기존에 “출산의사없음”을 선택하였던 여성의 경우 여전히 95.97%가 청년기본소득을 제공받더라도 “출산의사없음”을 선택하였으며, “모름”이나 “출산의사있음”으로 변화하는 비율이 4% 대에 그쳤다. 다만 기존에 출산의사가 불투명하였던 비경제활동 여성들의 경우는 기본소득의 긍정적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청년기본소득 시행 전 출산의사에 “모름”을 선택하였던 여성들의 40.30%가 청년소득 시행 후에도 여전히 “모름”을 유지하여 전체표본의 결과와 비교할 때 다소 비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4.06%가 향후 출산의사에 부정적으로 변화하는 반면 출산의사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변화한 비율은 부정적으로 변화하는 비율보다 대략 11%p 높았다. 한편 기존에 향후 출산의사가 있다고 밝힌 여성들의 경우는 청년기본소득 시행 전 출산의사 있었던 여성들의 78.99%가 청년기본소득을 제공받은 후에도 여전히 출산의사가 있음을 유지하였다.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모의실험을 진행한 결과와 달리 향후 출산의사에 모르겠다로 답변할 가능성이 다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비경제활동 여성을 대상으로 자녀수를 조건부로지트모형에 포함시켜 추정된 모형2에서도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비경제활동 여성들 중 기본소득 제공 전 출산의사가 없었던 여성은 모두 기본소득을 제공받더라도 여전히 “출산의사없음”을 선택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리고 상기에서 표본여성 전체를 분석하여 제시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기본소득 제공 전 향후 출산의사가 불투명하던 여성들은 자녀수 효과를 통제하지 않았을 때보다 기본소득 제공 시 “출산의사없음”을 선택할 가능성이 40% 가까이 되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반대로 “출산의사있음”을 선택할 가능성은 전체 표본을 분석했을 때보다 더 낮은 5.37%를 기록하였다. 반면 자녀수 효과를 통제하지 않은 모형과 유사하게 본래 향후 출산의사가 있다고 답변했

던 여성들 중 76%가 기본소득 제공 시에도 출산의사를 바꾸지 않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다만 이 경우 기본소득 제공 시 “출산의사없음”으로 변화할 가능성은 “모름”을 선택할 가능성보다 대략 4배 가까이 높다.

〈표 7〉 청년기본소득 제공 후 출산의사의 변화(비경제활동 여성)

구 분		청년기본소득 개인 당 50만원 지급 후 출산의사						계
		모형1(자녀수 변수 제외)			모형2(자녀수 변수 포함)			
		없음	모름	있음	없음	모름	있음	
관찰된 출산 의사	없음	95.97	0.00	4.03	100	0.00	0.00	100
	모름	24.06	40.30	35.64	39.39	55.24	5.37	100
	있음	12.45	8.56	78.99	19.03	4.57	76.41	100

임금·비임금 근로자인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도 전체적인 양상은 상기 두 분석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기존 “모름”으로 답변했던 여성의 경우와 “출산의사있음”으로 답변했던 여성 중 다소 다른 양상을 보였다. 상기 두 분석결과와 달리 임금·비임금 근로자 여성의 경우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경우 기본소득이 제공 되기 전부터 출산의사가 있었던 여성이 기본소득 제공 후에도 출산의사를 유지하는 비율이 90%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만 기존에 출산의사가 있던 근로여성이 기본소득을 제공받은 후 출산의사가 없다고 부정적으로 변화하는 비율은 상기 두 분석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임금·비임금근로자 여성의 경우도 자녀수 효과를 통제한 분석과 자녀수 효과를 통제하지 않은 분석에서 전반적으로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전체표본과 비경제활동여성의 경우 기존에 출산의사가 불투명했던 여성들 중 기본소득 시행 시 향후 “출산의사있음”으로 변화하는 비중이 자녀수 효과를 통제한 경우 자녀수를 통제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4배에서 7배 가까이 낮아 자녀수 통제 시 기본소득 제공의 긍정적인 효과가 거의 없었으나, 임금·비임금 근로자 여성의 경우 자녀수를 통제하든 안하든 두 모형 간의 결과에 큰 차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긍정적 효과도 매우 크게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자녀수 효과를 통제하지 않은 모형에서는 18.74%가 긍정적으로 변화하였고, 자녀수 효과를 통제한 모형에서는 오히려 20.64%로 더 크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8〉 청년기본소득 제공 후 출산의사의 변화(임금·비임금근로자 여성)

구 분		청년기본소득 개인 당 50만원 지급 후 출산의사						계
		모형1(자녀수 변수 제외)			모형2(자녀수 변수 포함)			
		없음	모름	있음	없음	모름	있음	
관찰된 출산 의사	없음	94.29	0.33	5.38	94.94	0.33	4.73	100
	모름	15.21	66.05	18.74	15.83	63.53	20.64	100
	있음	4.16	5.63	90.21	2.98	5.95	91.07	100

VI. 결론 및 시사점

저출생 문제는 생산과 소비의 둔화를 통한 우리나라 경제전반의 저성장을 유발하며, 이와 같은 경제성장 둔화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날 경우 세수 감소로 정부 재정이 악화되고 그 결과 사회안전망에 투입할 재원이 줄어들면서 우리 사회의 불안정성은 더욱더 커지게 된다. 따라서 그동안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다양한 출산장려책들을 시행하였으나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그런데 최근 불안한 청년세대들에게 기본소득과 같은 현금지원을 제공하여 일정수준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면 출산율 제고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논의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 하 본 연구는 여러 선행연구들(강영주·최지민, 2018; 이삼식, 2016; 황남희 외 2016)에서 현 청년세대들이 불안정한 경제상황으로 인해 적당한 때에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갖는 과정을 부담으로 느끼고 있음을 확인하였는바, 이들에게 일정한 현금을 지급하여 경제적 불안정성을 완화해줄 때 과연 긍정적인 출산효과로 이어질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연구 결과 19-34세 이하 청년들에게 기본소득 50만원씩을 매월 지급한다고 가정할 때, 해당 수혜대상에 포함되는 기존에 출산의사가 없던 기혼 여성들은 대부분은 여전히 미래에도 출산의사가 없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한편 미래 자녀 출산에 대한 의사가 불투명했던 기혼 여성들 중에는 경제활동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나 청년기본소득을 제공받아 소득이 증가한 경우 대략 15~30% 가까운 비율의 여성들이 자녀를 출산할 의사가 없다고 변화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아울러 기존에 자녀 출산의사가 있던 기혼여성 중 청년기본소득을 제공받을 때 “출산의사없음”으로 돌아서는 비중도 적지 않게 나타났다. 다만 기존에 자녀가 하나 이상 있는 가구의 경우 소득의 증가가 자녀수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선행연구들(Becker, 1981; Presser, 2001; 김선숙, 백학영, 2014; 정은희, 최유석, 2013)의 주장에 비추어볼 때, 자녀수를 통제하

지 않고 분석한 모형의 결과는 본 연구의 표본대상이 된 기혼여성들이 대부분 자녀가 하나이상인 가구의 여성이기 때문에 긍정적 영향이 과소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형에 자녀수 변수를 포함시켜 자녀수의 효과를 통제한 후 추가로 모의실험(simulation)을 진행하였다.

자녀수 효과를 통제한 분석결과에서는 자녀수 효과를 통제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할 때 다소 차이를 보이긴 했으나 여전히 전반적인 경향성에는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기존에 출산의사가 불투명하였던 여성의 경우는 자녀수의 효과를 통제한 모형에서 기본소득 제공 시 “출산의사없음”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 자녀수가 출산의사에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자녀수 효과를 통제한 경우와 자녀수 효과를 통제하지 않은 모형 간 기본소득 제공 전에 출산의사가 있다고 밝힌 여성들이 “출산의사있음”을 유지하는 비중은 거의 차이가 없었다. 이처럼 기존 출산의사 유형별로 다소 결과에 차이가 나타나긴 하였으나, 큰 틀에서 볼 때 자녀수의 효과를 통제하고 분석한 결과에서도 자녀수를 통제하지 않았을 때와 유사하게 기본소득으로 소득 증가를 경험한다고 이것이 바로 출산의사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청년기본소득과 같은 지속적이고 무조건적인 현금지원을 시행한다고 바로 청년층 기혼여성의 출산에 영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물론 기본소득을 통해 가구의 소득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 소득증가가 여성들의 출산의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만큼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특히 Becker(1981)는 우리나라와 같이 자녀책임이 전적으로 여성의 책임이라는 전통적 가치관에 기반한 국가들에서는 여성이 자녀출산을 결정함에 있어 자녀출산 및 양육에 필요한 직접적인 비용뿐만 아니라 육아를 위해 포기하게 되는 기회비용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유계숙(2009)과 석호원(2011)도 현금지원정책을 통한 실제수령액이 양육비용을 모두 보전할 수 있는 수준에 못 미칠 경우 출산율을 증가시키는데 있어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짐작해 볼 때 본 연구에서 제시한 기본소득 제공 금액이 자녀를 출산하였을 때 드는 직접비용까지는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을지 모르나, 자녀 출산으로 인해 여성들에게 발생하는 기회비용까지 모두 상쇄하지 못하였을 수 있다. 이 경우 기본소득과 같은 현금지원책은 청년들의 소득불안정성은 일정부분 완화해줄 수 있으나, 이를 통해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까지 유도하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가정양립정책이 비교적 잘 갖춰져 있고, 남성이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프랑스, 핀란드, 노르웨이와 같은 국가들에서는 보다 적은 가족수당 급여액을 지급하는데도 호주, 독일, 이태리와 같은 국가들보다 높은 출산율을 보여준다(한승수, 최충, 2019). 김대철(2018) 또한 아동수당제도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OECD국가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는데, 본 연구 결과에서도 덴마크, 프랑스, 핀란드 등 국가들의 GDP대비 아동수당 비중을 1% 증가시킬 때 합계출산율의 증가가 오스트리아, 독일, 일본 등 출산 저조국의 국가들보다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가 두 배 정도 커지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와 같은 국가들의 사례로부터 출생 시 발생하는 직접비용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파생되는 기회비용까지 합한 전체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미뤄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 결과는 현재 저출생 논의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육아를 위한 인프라나 서비스를 위한 제도가 함께 구축되지 않은 채 단순히 무조건적으로 현금지원만 계속 늘린다고 청년들에게서 당장 출산율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다.³⁾ 그동안 우리 정부는 1년에 10조 이상씩 지난 10년간 130조에 달하는 예산을 저출생 극복을 위해 쏟아 붓고 있으나, 오히려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자녀 출산 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이 일차적인 문제이긴 하나, 아직까지 자녀들의 육아 지원을 위한 인프라나 여성이 일과 가정을 모두 꾸려나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미흡하다보니 청년층 여성들이 출산을 고려할 때 그만큼 기회비용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도 출산율을 쉽게 끌어올리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로 지적할 수 있다. 즉, 소득증가는 물론이거니와 일자리, 주거, 보육 등 아이를 낳고 기르는 부모의 삶 전반에 대한 인프라 개선이 없이는 저출생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1990년대까지 대표적인 저출생 국가였던 프랑스가 OECD국가 중 출산율이 매우 높은 나라로 등극하게 되기까지 프랑스 정부가 시도한 노력에서 우리 정부는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 프랑스는 여성이 임신을 하면서부터 그 자녀가 독립하기까지 지속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3) 본 연구 결과만을 가지고 이와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기에 충분할까라는 고민에서 본래 서울시 청년수당의 제공수준인 월 50만원에 더해 2019년 기준 1인 중위소득 50% 수준인 85만원을 제공한다고 가정할 때 출산율 효과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추가로 분석해 보았다. 그러나 분석 결과 50만원과 85만원을 제공 시 출산율 변화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런데 만약 85만원의 기본소득을 제공시 결과를 제시할 경우, 본 연구는 현금지원을 통해 소득이 증가할 때 출산율이 증가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 연구임에도 기본소득의 도입의 찬반 논쟁을 위한 목적에서 진행된 연구로 비취질 우려가 있어 해당 연구결과는 본 논문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다만 이러한 결과비교를 통해 현금지원을 늘린다 해도 저출생 문제 완화에는 큰 변화가 없을 수 있다는 본 연구의 주장을 재확인하는 데는 의미가 있었음을 밝혀둔다.

받는 확실한 양육 및 교육 지원제도를 구축하고 있어서, 아이는 개인이 낳지만 키우는 건 국가가 책임진다는 말까지 하고 있을 정도이다. 출산 강국 프랑스에서는 신생아 수당, 대부분의 공립시설에서의 무상보육서비스, 장기간의 육아 휴직과 출산휴가 등을 제공하고, 국민의 상당수가 가족수당의 혜택을 받는 등 매우 강력한 가족정책을 시행한다(Thévenon, 2016). 그 결과 출산에 따르는 기회비용이 낮아짐으로 인해 총비용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져 출산율이 상승한 것으로 해석된다(최동순, 2009) 따라서 우리나라도 현재 OECD 국가 꼴찌를 달리고 있는 이 저출생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금지원을 통한 청년들의 소득보장을 늘려 삶의 안정성을 찾아주는 노력도 중요하나, 그와 동시에 공적 보육서비스를 구축하는데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아이를 맡아 키운다는 보육의 공공성을 대폭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상 한계가 있음을 밝혀둔다. 우리나라에서 출산의 문제는 여성의 경제활동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우리나라처럼 가부장적 문화규범 하 대부분의 가정에서 여전히 여성의 독박육아를 강요하는 사회에서는 특히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출산기피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혼여성이 출산을 결정할 때 단편적으로 개인 소득의 감소와 출산으로 인해 보육비 등의 비용 증가라는 소득의 변화 측면만 고려했을 뿐, 경력단절이나 직무유형 등의 변화 등 노동시장에서의 지위변화와 같은 측면은 고려되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 여성의 노동공급과 출산율이 함께 고려된 효용함수를 통해 추가적으로 기본소득의 효과를 분석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앞서 서론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저출생의 문제는 청년층의 결혼율의 저하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혼인 이후에 출산으로 연결되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본 연구처럼 기혼여성을 중심으로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를 검토하는 연구도 의미가 있긴 하나, 그보다 향후 현금지원을 통해 소득이 증가되었을 때 과연 청년들에게서 결혼에 관해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날지를 검증하는 연구가 출산율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에서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본소득은 출산율 증가를 그 주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와 같이 파생적인 효과를 분석한 연구결과에 대한 해석에 있어 주의를 요한다. 특히 기본소득은 시민들에게 무조건적 소득보장을 통해 실질적 자유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본 연구 결과가 기본소득 도입의 찬반 논의 중 어느 쪽 주장을 지지하고자 함에 있지 않음을 밝혀둔다. 그보다는 어느 하나의 정책도입을 검토할 때 최대한 다양한 측면에서 제도를 검토하여 종합적 효과성을 비교·분석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기본소득 제도에서 정책담당

자나 연구자들이 예상하지 못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제도의 주요목적에 대한 직접적 효과보다는 간접적 혹은 파생적 효과를 예측해 봄으로써 학문적 기여를 하고자 하였다. 이는 최근 대부분의 기본소득의 연구들이 주로 그 주목적인 시민들의 실질적 자유보장을 통해 소득분배의 형평성을 달성하고 이를 통해 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을 달성하는지에 대한 연구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바, 그 이외 나타날 수 있는 간접적인 효과들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점검해보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청년기본소득 모형은 만 19세에서 34세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당연령동안에 월 50만원씩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그런데 자녀 출산과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보다 훨씬 더 장기적인 기간 동안 발생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청년기본소득 제도의 현금수혜 총량이 양육 전체주기에서 발생하는 비용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 결과는 출산 및 양육비용 발생의 전체기간을 고려하지 못한 점에서 한계를 보인다. 그럼에도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현실적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저출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많은 연구 결과들(Becker, 1981; Presser, 2001; 강영주·최지민, 2018; 이삼식, 2016; 황남희 외 2016)을 미루어 볼 때 단기적 소득증가로는 출산율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본 연구 결과는 물론 청년기본소득이 청년에 한정되어 제공되긴 하나 가구소득을 장기적으로 꾸준히 증가시키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고, 청년들의 출산의사 결정 역시 이러한 장기적인 추가적 소득 증대 기대에 따라 나타날 가정 하에서 나타난 분석결과이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경제학자들의 주장처럼 일시적 소득 증가가 아닌 꾸준하고 장기적인 소득 증가 시 과연 합리적 경제주체인 청년들에게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는지와 변화가 나타난다면 어떠한 형태로 발현될지를 예측하고자 하였다. 특히 최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까지도 경쟁적으로 현금성 지원을 늘려가는 추세인데, 도입취지는 다르나 현 지자체의 단발성 출산장려금과 같은 현금지원책보다 장기적이고, 기존의 아동수당이나 육아수당 보다 더 높은 액수를 꾸준히 지급할 때, 청년가구에서 과연 출산율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소득이 증가할 때 합리적 경제주체는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를 통해 의사결정을 한다는 경제학적 가정을 기초로 판단컨대 청년기본소득의 출산율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는 예측결과를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참고문헌

- 강영주·최지민(2018). 저출산 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정책설계 및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원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고제이·고경표(2017).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아동수당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대철(2018). “아동수당제고가 출산율 제고에 미치는 효과”. 한국재정정책논집. 20(2): 1-23.
- 김선숙·백하영(2014).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출산행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정책. 21(3): 129-157.
- 박선권(2019). 저출산 관련 지표의 현황과 시사점.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2018).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참여자 분석연구. 서울: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 석호원(2011). “출산장려금 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25(2): 143-180.
- 신윤정·박종서·김은정·기재량·최인선(2014).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자녀 양육 환경 개선 방안.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윤홍식(2017). “기본소득, 복지국가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비판사회정책. 54: 81-119.
- 윤홍식(2018). “한국사회, 무엇을 할 것인가? 출산과 양육의 권리를 가로막는 한국복지체제의 유산”. 제 5회 참여연대 비판사회복지학회 공동포럼 자료집.
- 이경희·민인식(2018). “아동수당이 기혼여성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마이크로 시뮬레이션 활용”. 조사연구. 19(2): 25-49.
- 이삼식(2016).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 계획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전략과 조건”. 보건복지포럼. 232: 6-17.
- 이석환(2014).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정책의 효과 평가”.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6 (1): 23-51.
- 이승주·문승현(2017). “직장 기혼여성의 첫 자녀 출산의사와 관련된 근로 및 출산장려제도 요인분석”. 한국가족복지학. 55: 129-155
- 유계숙(2009). “저출산 정책의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1): 169-189.
- 유해미·서문희·한유미·김문정(2011). 영아 양육비용 지원정책의 효과와 개선방안: 양육수당을 중심으로.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정은희·최유석(2013). “기혼여성의 둘째자녀 출산계획 및 출산과 관련된 요인”. *보건사회연구*. 33(1): 5-34.
- 최동순(2009). 출산율 저하 추세 바뀔 수 있다. 서울: LG경제연구원.
- 최영준·윤성열(2019). “자유안정성을 위한 기본소득 실험: 새로운 사회경제체제를 위한 도전”. *정부학연구*. 25(1): 5-41.
- 최준욱·송헌재(2010). 저출산 대응 재정 정책수단의 효과 및 영향 분석. 세종: 한국조세연구원.
- 최한수(2017). 각국의 기본소득 실험이 한국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 세종: 한국조세연구원.
- 한승주·최충(2019). “아동수당과 합계출산율: OECD 국가를 중심으로”. *한국경제포럼*. 12(1): 27-55.
- 황남희·김경래·배혜원·이상협·Mason, A. (2016). 저출산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 출산율 목표수준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경제연구원(2018. 7. 5.). “2040 직장인 여성, 이상적 자녀수는 2.0명이 나 현실은 1.2명”-보도자료.
- 한국고용정보원(2017. 8. 10.). “청년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모색 세미나 개최 - 청년 삶의 질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 Andersen S. N., Drange, N., and Lappegård, T. (2018). Can a cash transfer to families change fertility behaviour?. *Demographic Research*, 38, pp. 897-928.
- Becker, G. S. and Lewis, H. G. (1973). On the Interaction between the Quantity and Quality of Childre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1(2), pp. S279-88
- Becker, G. S. (1981). *A Treatise on the Famil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Cameron, A. C, and Trivedi, P. K. (2010). *Microeconometrics using Stata, (Revised Ed.)*. College Station, TX: Stata Press.
- Creedy, J. and Kalb, G. (2005). Discrete Hours Labor Supply Modelling: Specification, Estimation and Simulation. *Journal of Economic Surveys*, 19(5), pp. 697-734.
- Drago, R., Sawyer, K., Sheffler, K. M., Warren, D., and Wooden, M. (2009). Did Australia’s Baby Bonus Increase Fertility Intention and Births?. *Population Research and Policy Review*, 30 (3), pp. 381-397.

- Fitzpatrick, T. (1999). *Freedom and Security: An Introduction to the Basic Income Debate*. London: Palgrave Macmillan.
- Friedman, M. (1962). *Capitalism and Freedom*.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appegård, T. (2010). Family policies in Norway.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26(1), pp. 99-116.
- Milligan, K. (2005). Subsidizing the Stork : New Evidence on Tax Incentives and Fertility.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7 (3), pp. 539-555.
- Murray, C. (2006). *In our hands: A plan to replace the welfare state*. Washington, DC: The AEI Press.
- Offe, C. (1997). Towards a New Equilibrium of Citizen' Rights and Economic Resources?, in Goodin, R. E. & Michell, D. (eds.). *The Foundations of the Welfare State*, Volume I. An Elgar Reference Collection, pp. 87-114.
- Offe, C. (2009). Basic Income and the Labor Contract. *Analyse & Kritik*, 31(1), pp. 49-79.
- Presser, H. B. (2001), Comment: A gender perspective for understanding low fertility in post-transitional societie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Supplement to Vol. 27, Global Fertility Transition, pp. 177-183.
- Raventos, D. (2007). *Basic Income: The Material Conditions of Freedom*. London: Pluto Press.
- Standing, G. (2017). *Basic Income: And How We Can Make It Happen*. London: Penguin.
- Thévenon, O. (2016). The Influence of Family Policies on Fertility in France: Lessons from the Past and Prospects for the Future. In: Rindfuss R., and Choe, M. (eds) *Low Fertility, Institutions, and their Policies*. Springer, Cham
- Van Parijs, P. (1995). *Real Freedom for All: What (if anything) can justify capital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Van Parijs, P. (2006). Basic Income: A simple and Powerful Idea for the Twenty First Century, in Ackerman, B., Alstott, A., and Van Parijs, P.(eds.) *Redesigning Distribution: Basic Income and Stakeholder*

Grants as Cornerstones of a More Egalitarian Capitalism. London: Verso.

Van Soest, A. (1995). Structural Models of Family Labor Supply: A Discrete Choice Approach. *Journal of Human Resources*, 30(1), pp. 63-88

Widerquist, K., Nguera, J. A., Vanderborght, Y., and De Wispelaere, J. (2013). *Basic Income: An Anthology of Contemporary Research*. Oxford: Wiley Blackwell.

Abstract

A simulation study of the effects of Youth Basic Income on fertility decision: focusing on women in their 20s and early 30s

Seungju Lee* · Insik Min**

Although the Korean government has made lots of efforts to solve the low birth rate problem, the effects were not that great as expected. Recently, there have emerged some opinions claiming that cash transfer, such as basic income, could be a more effective mechanism for improving the overall quality of life among the young and thereby elevating their propensity to giving birth. In this light, this study is to simulate whether and how much, if any, the increase in income through cash transfer will affect the changes in future fertility decision of young married women, using “Youth Basic Income model.” For this analysis, married women aged 21 to 34 were selected from the 5th and 6th waves of the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 Families data. With this sample, the study simulates what changes in fertility decisions of the married women would occur when all family members aged between 21 and 34 are provided with a monthly Youth Basic Income of KR 500,000 won. The study results show that cash transfer like Youth Basic Income does not have a positive effect on fertility decisions. This implies that this unconditional cash transfer alone cannot lead women to increase their propensity to giving birth in the future as long as family-friendly services and environment, such as public care centers, child benefits, and family-friendly work places, are not well-supported.

Keywords : Fertility Decision, Youth Basic Income, Universal Welfare, Micro-simulation, Discrete choice model

* First Author: Gachon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Social Policy, Korea Inequality Research Lab, Researcher

** Corresponding Author: Kyunghee University, Department of Economics, Professor